

손해평가사 1차 종합반 교안 정오표(26~50차시)

페이지	수정전	수정후	비고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설치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 어업재해보험심의회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설치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임기 : 3년)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명) ③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임기 : 3년)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명) ③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명) ④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신설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분과위원회 ㉗ 농업재해보험심의회 :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㉘ 어업재해보험심의회 :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분과위원회 ㉗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㉘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㉙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㉚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79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8 193 501 408">행정구역 단위</td> <td data-bbox="501 193 1106 408">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338 408 501 536">권역 단위</td> <td data-bbox="501 408 1106 536">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td> </tr> </table>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37 193 1301 408">행정구역 단위</td> <td data-bbox="1301 193 1912 408">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1137 408 1301 536">권역 단위</td> <td data-bbox="1301 408 1912 536">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td> </tr> </table> <p data-bbox="1167 555 1921 1018">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아래에서 정하는 내용이 변경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p>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신설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88	<p data-bbox="331 1070 1113 1198"> ㉞ 농어업재해보험법 - 민법에따라 장관(농림,해양) 허가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손해평가만 위탁 가능하며 보험모집은 위탁 불가) </p>	<p data-bbox="1131 1094 1912 1174"> ㉞ 농어업재해보험법 - 민법에따라 장관 허가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p>									
88	<p data-bbox="331 1278 1113 1358"> ③ 재정 미지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 보험목적물을 재해보험에 가입시 정부는 재정지원 안함. </p>	<p data-bbox="1131 1262 1912 1382"> ③ 재정 미지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 보험목적물을 재해보험에 가입시 정부는 재정지원 안함. </p>									

98	(1) 손해평가인의 업무(요령3조)기출2회	(1) 손해평가의 업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요령3조)기출2회	
98	(2) 손해평가인 위촉(요령4조) 기출1회.3회.6회.7회 ① 손해평가인증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인 위촉(요령4조) 기출1회.3회.6회.7회 ① 손해평가인증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신설 조항)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신설 조항) </div>	

102	<p>③ 평가결과 제출(손해평가후 서명날인 거부 포함) :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평가결과 제출(손해평가후 서명날인 거부 포함) :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최종 조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축사 건물은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103	<p>① 검증조사 실시</p> <p>㉠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p>	<p>① 검증조사 실시</p> <p>㉠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p>	
103	<p>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 방법</p> <p>㉠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 = 기준수확량 × 가입당시 단위당 가입가격</p> <p>단. 인삼 보험가액 = 가입면적 × 가입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산정하되,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p>	<p>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 방법</p> <p>㉠ 특정위험방식 인삼 보험가액 = 가입면적 × 가입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산정하되,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p>	
123	<p>문제 7번 정답 ③</p>	<p>문제 7번 정답 ①</p>	
124	<p>문제 8번 해설</p> <p>제3조(손해평가인의 업무)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문제 8번 해설</p> <p>제3조(손해평가인의 업무) 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135	문제 40번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문제 40번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 의 업무가 아닌 것은?	
135	문제 41번 ④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고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41번 ④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먼저 실무교육을 수료 후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35	문제 41번 해설 ④ 실무교육 후 손해평가 인증 발급	문제 41번 해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39	문제 52번 해설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④	문제 52번 해설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답 없음]	
140	문제 54번 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문제 54번 ④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40	문제 54번 해설 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문제 54번 해설 ④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41	<p>문제 55번</p> <p>④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p>	<p>문제 55번</p> <p>④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141	<p>문제 55번 해설</p> <p>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문제 55번 해설</p> <p>④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103페이지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부터는 [24년 개정법령으로 전체변경] 합니다</p>			